

2023년 소방청 전문경력관(항공분야) 채용시험 공고

2023년 소방청 전문경력관(항공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소방청장

1. 관련근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전문경력관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2. 선발예정인원 (총 21명)

임용예정직급	채용 예정인원	모집단위 (근무기관)	담당업무	임용예정시기
전문경력관 나군(조종)	18명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조종·운항관리	2023년 9월(예정)
전문경력관 나군(정비)	3명		정비·탑승비행	

3. 담당업무

채용분야	주요업무
조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 헬리콥터를 활용한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대형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산불화재 및 특수화재 항공 진압○ 소방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등○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 헬리콥터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 헬리콥터 탑승비행 및 정비○ 소방 헬리콥터 자재 관리 및 정비계획 작성○ 인명구조 작업을 위한 호이스트 작동 및 구조 활동 지원○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3)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인 사람(2003. 12. 31. 이전 출생자)
- 4)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5)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6) 「항공안전법」 제43조(자격증명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에 따른 효력 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응시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요건: 채용예정분야별 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전문경력관 나군(헬리콥터 조종)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헬리콥터 조종	전문경력관 나군	18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 헬리콥터를 활용한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 대형 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산불화재 및 특수화재 항공 진압 ○ 소방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등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긍정성(긍정적 팔로워십), 문제해결력 · 관계 구축력, 의사 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집행관리능력, 계획관리능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 및 인명구조 관련 기술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소방 헬리콥터의 특수성 및 해외 사례 분석에 필요한 지식 ○ 항공기상 및 항공 교통 관제 지식
------	---

응 시 자 격 요 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헬리콥터 조종 분야	
자격 및 경력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항공안전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 「항공안전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③ 「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④ 헬리콥터 조종경력이 총 1,000시간 이상(모의비행시간 미포함) ⑤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항 없음 	

전문경력관 나군(헬리콥터 정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헬리콥터 정비	전문경력관 나군	3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 헬리콥터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 헬리콥터 탑승비행 및 정비 ○ 소방 헬리콥터 자재 관리 및 정비계획 작성 ○ 인명구조 작업을 위한 호이스트 작동 및 구조 활동 지원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긍정성(긍정적 팔로워십), 문제해결력 · 관계 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집행관리능력, 계획관리능력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역량(기체계통,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연료 및 윤활계통) ○ 회전익 계통, 유압 및 조정 계통, 전기·전자·통신·계기 ○ 관리역량(항공안전법 및 정비행정, 영어 능력 평가) ○ 임무역량(탑승정비사의 CRM 및 항공안전 지식 정도, 역할 등)
응시자격요건	<p style="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5px;">*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p> <p style="background-color: #e0f2e0;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관련분야: 헬리콥터 정비 분야</p>	
	자격 및 경력	<p>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제35조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후 헬리콥터 정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라 최근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 경험이 있는 사람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항 없음

<공통>

- ① '응시자격요건'(자격 및 경력)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응시 가능
- ②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8.11.)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 ①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에 근무 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함(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①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담당업무 미기재, 채용 분야와 연관성이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담당업무를 기술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② 비정규직의 경우 관련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③ 경력증명서 제출 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기재(각종 증명서류 미제출 시 관련 업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필수 제출)
- ④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예외) **발행분**을 제출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⑤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경력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② 시간제 근무 또는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근무경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람만 인정

- ①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 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실적, 수입 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②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에서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③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 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 폐업회사의 경우 다음의 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원,

-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①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total.kcomwel.or.kr)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ei.go.kr)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②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을 받은 한국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 경력증명서, 자격증(면허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함

5. 시험일정

시험단계	시험절차	채용분야	시험공고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시험공고: '23. 6. 19.(월)					
원서접수: '23. 6. 21.(수) ~ 6. 30.(금)					
1차	서류전형(신체검사 / 공통)		-	7. 12.(수) 한	7. 14.(금)
2차	실기시험	조종 정비	7. 14.(금)	7. 19.(수) ~ 7. 25.(화) 7. 26.(수) ~ 7. 28.(금)	8. 1.(화)
인적성	검사(개별 안내 / 공통)			8. 3.(목)	-
3차	면접시험	조종 정비	8. 1.(화)	8. 7.(월) ~ 8. 11.(금)	8. 18.(금)

- 1) 응시번호는 응시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 2)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 3) **실기·면접시험은 '23년 소방공무원(법무·항공분야) 채용시험(공고 2023-111호)과 병행 시행**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3. 6. 21.(수) ~ 6. 30.(금)

※ 응시지역은 단일 지역만 접수 가능하며, 2023년 소방공무원(법무·항공분야) 채용시험(공고 2023-111호)과 중복접수 불가함

나. (접수방법) 119고시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1)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주말 ·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접수 가능

2)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 119고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원서접수 마감일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불가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

4)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 할 것(119고시 → 마이페이지 → 내접수내역)

5)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 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시험절차마다 신분증, 응시표,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소지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는 면접시험일에 제출

다. (응시수수료) 전문경력관 나군 7천원

7.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라.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마.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바.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거나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고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사.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한까지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합니다.
- 아.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서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기재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최종합격자가 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지정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취소)

8. 시험절차 및 합격자 결정

1 1차 시험: 서류전형

- 가. 임용예정 직위별로 소극적 서류전형으로 시행
나. 응시자격요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증명서류는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함
-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전화상담(☎ 044-205-7290) 후 서류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분야	제출서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② 자기소개서 1부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⑥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1부⑦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면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⑧ 자력표(국방부), 병적기록표(병무청), 군부대 경력증명서 중 임용사항, 근무경력, 징계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1부(군 경력자에 한함)
조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명서 사본 1부② 경력(재직)증명서 1부③ 비행경력증명서(각 근무 기관별 최종 비행시간이 명시된 발행본) 1부④ 계기비행자격증명서 1부⑤ 항공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사본 1부⑥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최종시험예정일 기준 12개월 이내 발행) 1부⑦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류
정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서 1부② 헬리콥터 정비 경력증명서(각 근무 기관별 발행본) 1부③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경력증명 제출 시 포함될 서류

- ▶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사업주 포함)에 한하여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함(폐업회사의 근무경력자 포함)
 - 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③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 ▶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①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확인서(회사 자체 서식 외 담당업무 기재 필요시 사용)
 - ②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 ③ 급여계좌내역(계약직경력자에 한함 / 근무기간 기준), 갑근세증명서
 - ④ 근로계약서(계약직경력자에 한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명시)

※ ①, ②, ③번은 본인의 근무경력 기간 모두 나오도록 발급
※ ③, ④번은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만 제출

다. 해산 ·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면 근무경력사실 확인서와 사실증명(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을 제출해야 함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민원증명

민원증명 이용시간

증명발급 상세 안내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연중무휴 24시간

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연중무휴 08:00 ~ 22:00

사실증명발급신청

연중무휴 09:00 ~ 24:00

민원증명 이용절차

01 홈택스 로그인

02 민원증명 신청진행

03 민원증명 처리결과

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민원증명신청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국세 원납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 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2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등)

부기기초세 과세표준증명

부기기초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모법납세자증명

국세납세증명 조회(정부관리기관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지원 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 등)

취업후학자금상환·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

2 2차 시험: 실기시험

- 가. (시험대상)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나. (시험기준) 당해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평정표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평정하고 점수 부여

채용분야	실기시험 평정항목
조종사 (모의비행 10개 항목)	① 이륙 상승 및 선회 ② 강하 및 선회 ③ 헬기장 접근 ④ 구조·구급 임무 ⑤ 화재진압 임무 ⑥ 자세회복 ⑦ 계기비행 전환 ⑧ 무선교신 절차 ⑨ CRM(승무원 자원관리) ⑩ 비상절차
정비사 (구술 10개 항목)	① 기체계통 ②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③ 연료 및 윤활계통 ④ 회전의 계통 ⑤ 유압 및 조종계통, ⑥ 전기·전자·통신·계기 ⑦ 항공안전법 및 정비행정 ⑧ 영어능력평가 ⑨ 탑승정비사의 CRM 및 항공안전관리 ⑩ 탑승정비사의 역할

- 다. (합격기준) 평정항목별 40퍼센트 이상, 전 평정항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3 3차 시험: 면접시험

- 가. (시험위원) 3명 이상(외부위원 1/2 이상)

※ 면접 중 위원 회피(기피) 시에도 3명 이상 유지가 가능하도록 구성

- 나. (시험방법) 2차 시험(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 다. (평정기준) 평정요소마다 10점 ~ 2점으로 5단계의 정수로 평정

평정요소	평정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

합격자 결정

가.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합격 기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25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불합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25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결정 ❷ 5개의 평정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나. (점수의 계산)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동점자의 합격결정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함(셋째자리에서 절사)

9. 임용예정일 및 보수

가. 임용 예정일: 2023. 9월 예정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전문경력관으로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5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7년의 전출 제한 기간이 지나야 전출할 수 있음.

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적용 규정 등에 따라 책정

구분	2023년도 월지급액 참고표 (단위: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경력관 나군	4,730,300 (38호봉)	1,962,300 (1호봉)

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등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조종·정비 분야	취업지원대상자 ¹⁾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²⁾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각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2) 「국가공무원법」제36조(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가. **기준일**: 서류전형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응시자에 한함
- 나. **가점점수 및 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다. **적용범위**: 채용시험의 서류전형 · 실기시험 ·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될 때에는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하는 시험에서는 과목별로 가점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 라. **가점 산정 인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 또는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4조,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1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받아 합격하는 사람 포함)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 마.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2. 의사상자 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가. **기준일**: 서류전형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등록된 응시자에 한함
- 나. **가점점수 및 대상자**: 만점의 3% 또는 5%
- 다. **적용범위**: 시험단계별 득점에 점수를 가산. 다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 라. **가점 산정 인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 마. 의사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044-202-3255)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3. 유의사항

- 가.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모두 해당하면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 나. 가점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 가점 표기 및 증빙자료 첨부
- 다.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가점 불인정)

※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참고

11. 기타 참고사항

- 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최종합격자 발표 후 10일 내)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림.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됨
- 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할 수 있음
- 마. 발행기관의 증명이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 또는 폐업 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 사.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름
- 아. <문의처>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8 ~ 90)

※ 문의전화: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p.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조종사			
<input type="checkbox"/> 정비사			

구분	연번	제출목록	제출 여부	
			제출	미제출
공통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2	자기소개서		
	3	직무수행계획서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원		
	7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8	자력표(국방부), 병적기록표(병무청), 군부대 경력증명서 중 임용사항, 근무 경력, 징계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1부(군 경력자에 한함)		
조종사	1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명서		
	2	경력(재직)증명서		
	3	비행경력증명서(각 근무 기관별 최종 비행시간이 명시된 발행본)		
	4	계기비행자격증명		
	5	항공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사본		
	6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월 이내 발행)		
	7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정비사	1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서 사본		
	2	헬리콥터 정비 경력증명서(각 근무 기관별 발행본)		
	3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2023. . .

성명: (서명)

소방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자기소개서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
		.

※ 작성 요령

- 제시된 소제목(주제)을 바탕으로 작성자 본인의 역량을 기술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을 사용하여 작성 (신명조, 13p)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취지 및 응시분야에 대한 소견	(지원동기 및 포부)
--------------------	-------------

학업 및 경험(경력) (성취도 및 활동내용)

특기사항	(장점, 보유자격 및 기술 등)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번호		성명	
<p>■ 작성 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 색은 검정- 줄 간격 160%로 작성할 것- 보고서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p>■ 시험공고에 명시된 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 <p>■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p>			

※ 작성 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근무경력 사실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이 사실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 경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 . . ~ . . . (년 월)	

입증인(1)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입증인(2)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붙임: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1부

소방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앞쪽)

※ 뒷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⑥ 검사 시					
⑦ 재 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사 진
(3.5cm × 4.5cm)

※ 암인 또는 계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우: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우: ()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 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합 격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210mm×297mm[백상지(80g/m²)]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종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부처	소방청
생년월일	. . .	응시직급	전문경력관 나군

본인은 소방청에서 시행하는 전문경력관(항공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소방청이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
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
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채용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특성,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를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채용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종족 및 제출서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 자가격리 여부 확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같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때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처분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소방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부정행위, 결격·범죄, 자격(응시요건) 확인 등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동의대상
1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서류제출자 전원
2	결격·범죄 통합 조회	서류제출자 전원
3	자동차운전면허증	서류제출자 전원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서류제출자 전원
5	기타 채용시험 관련 제출서류	서류제출자 전원

※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출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국가기술자격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인 방법(공동이용 행정정보)으로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아 서류의 진위 확인, 결격사유 조회 등이 불가능할 때는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방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합격증명서 발급 신청서

시험명	2023년 전문경력관(항공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지역		응시번호	
분야(계급)		성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	-	이메일주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의거 위와 같이 합격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	응시번호	
현주소지			
격리기간		관할보건소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청사유			

□ 제출서류

※ 서류 제출현황 (제출 시 □에 '√' 체크)

- ① (공통)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서식 10) □
 -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 11) □
 - ③ (확진자용) 시험 응시가능 의사 소견서 □
 - ④ (자가격리자용) 자가격리 통지서 □

※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2023년 전문경력관(항공분야) 채용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도 시험용)

확진·자가격리자·밀접접촉자의 시험응시 여부 확인을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전화,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질병관리청, 관할 보건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응시자 확진·자가격리 여부 확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기본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활용 동의 여부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취급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